

# 교원 연봉제 운영에 관한 내규

**제1조 (목적)** 이 규정은 연봉계약제교수에 대한 연봉계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 (계약의 체결)** ① 교원신규임용시 1년간 연봉계약을 체결하고, 계약기간 동안 교수업적평가규정에 의거 평가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.

② 교원의 연봉은 별지서식 제1호에 의한 연봉계약서를 체결한다.

③ 계약의 내용에는 계약기간, 보수, 연봉외 급여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.

**제3조 (계약기간 및 재계약)** ① 연봉의 계약은 임용일 기준 1년 단위로 계약한다.

② 계약기간 중 승진시 승진 임용일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계약한다.

③ 재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.

④ 임용계약 종료시에는 연봉계약도 자동 종료된다.

**제4조 (비밀유지)** 계약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**제5조 (보수)** ① 연봉액은 별표1의 기본연봉표와 별표2의 성과연봉표에 의한다. <개정 2011. 3. 1., 2011. 10. 1., 2011. 11. 1., 2012. 9. 28. 2013. 9. 1., 2014. 3. 1., 2016. 9. 2.>

② 최초계약기간의 연봉액은 연구 및 교육경력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이후의 계약에 있어 연봉산정을 위한 평가는 교수업적평가규정에 준한다. 단, 필요한 경우 그 연봉은 총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1. 11. 1.>

③ 근무기간 중 본 대학교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 성과연봉에 특별 추가지원 할 수 있다.

**제6조 (관련규정의 적용)** 연봉계약제로 임용된 교원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로 정함이 없는 한 교원인사규정 등 관련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한다.

**제7조 (관련규정의 고지)** 임용권자는 계약체결 전에 신규임용 교원이 연봉계약제와 관련된 학내 규정의 주요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
**제8조 (내규의 개폐)** 본 내규의 개·폐는 기획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결재로 시행한다. <개정 2011. 1. 28.>

## 부 칙

① (시행일) 이 내규는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폐지) 연봉계약제 교수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.

## 부 칙

① (시행일) 이 내규는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제5조의 개정된 별표1의 기본연봉표는 2009년4월1일 임용자부터 적용하며, 이전 임용자의 경우 본인의 선택에 의한다.

## 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내규는 2011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내규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내규는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내규는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내규는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  
② (경과조치) 시행일 현재 체결되어 있는 연봉계약서의 연봉은 별표3의 조건표에 의한다.

## 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내규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내규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내규는 2016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내규는 2016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1]

## 연봉제교원 기본연봉표

### 정년트랙 교원

| 구 분 - 정년트랙    | 기본연봉표(원)   | 비고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|
| 조 교 수 초 임     | 28,560,000 |    |
| 조 교 수 2년차     | 29,990,000 |    |
| 조 교 수 2-1년차 * | 30,740,000 |    |
| 조 교 수 3년차     | 31,490,000 |    |
| 조 교 수 4년차     | 33,060,000 |    |
| 조 교 수 5년차     | 34,380,000 |    |
| 조 교 수 6년차     | 35,760,000 |    |
| 조 교 수 7년차이상   | 36,480,000 |    |
| 부 교 수 초 임     | 37,190,000 |    |
| 부 교 수 2년차     | 38,680,000 |    |
| 부 교 수 3년차     | 39,840,000 |    |
| 부 교 수 4년차     | 41,040,000 |    |
| 부 교 수 5년차     | 42,270,000 |    |
| 부 교 수 6년차이상   | 42,900,000 |    |
| 교 수 초 임       | 43,540,000 |    |
| 교 수 2년차       | 44,850,000 |    |
| 교 수 3년차       | 45,750,000 |    |
| 교 수 4년차       | 46,670,000 |    |
| 교 수 5년차       | 47,600,000 |    |
| 교 수 6년차       | 48,550,000 |    |
| 교 수 7년차       | 49,040,000 |    |
| 교 수 8년차       | 49,530,000 |    |
| 교 수 9년차       | 50,030,000 |    |
| 교 수 10년차 이상   | 50,530,000 |    |

## 비정년트랙교원 기본연봉표

| 교육전담, 실습전담,<br>강의전담, 산학협력중점 | 기본연봉표(원)   | 비고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|
| 조 교 수 초 입                   | 30,193,500 | 기본연봉에<br>성과급, 급식비,<br>자가운전보조비등<br>연봉외 급여 포함  |
| 조 교 수 2년차                   | 31,656,000 |  |
| 조 교 수 3년차 이상                | 32,218,500 |  |
| 원어민교수 (기본시수 15시간)           | 기본연봉표(원)   | 1. 기본연봉에 성과급, 급식비,<br>자가운전보조비등 연봉외 급<br>여 포함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조교수 초입                      | 27,600,000 |  |
| 조교수 2년차                     | 28,980,000 |  |
| 조교수 3년차                     | 30,432,000 |  |
| 조교수 4년차                     | 31,956,000 |  |
| 조교수 5년차                     | 33,552,000 |  |
| 조교수 6년차 이상                  | 35,232,000 |  |
| 연구교수                        | 기본연봉표(원)   | 1. 기본연봉에 성과급, 급식비,<br>자가운전보조비등 연봉외 급<br>여 포함.<br>2. 연구비 재원에 따라 이를<br>기준으로 가감하여 책정. |
| 조 교 수                       | 30,000,000 |  |

[별표2] 연봉제교원 성과연봉표

| 기준직급                | 성과급 A      | 성과급 B      | 성과급 C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
| 조교수초임<br>(박사학위미소지자) |            | 7,020,000  |            |
| 조교수초임<br>(박사학위소지자)  | 9,730,000  | 9,130,000  | 8,530,000  |
| 조 교 수 2년차           | 10,250,000 | 9,650,000  | 9,050,000  |
| 조 교 수 3년차           | 12,150,000 | 11,550,000 | 10,950,000 |
| 조 교 수 4년차           | 12,750,000 | 12,150,000 | 11,550,000 |
| 조 교 수 5년차           | 13,380,000 | 12,780,000 | 12,180,000 |
| 조 교 수 6년차 이상        | 14,040,000 | 13,440,000 | 12,840,000 |
| 부 교 수 초 임           | 15,690,000 | 15,090,000 | 14,490,000 |
| 부 교 수 2년차           | 16,450,000 | 15,850,000 | 15,250,000 |
| 부 교 수 3년차           | 17,250,000 | 16,650,000 | 16,050,000 |
| 부 교 수 4년차           | 18,090,000 | 17,490,000 | 16,890,000 |
| 부 교 수 5년차 이상        | 18,430,000 | 17,830,000 | 17,230,000 |
| 교 수 초 임             | 20,680,000 | 20,080,000 | 19,480,000 |
| 교 수 2년차             | 20,900,000 | 20,300,000 | 19,700,000 |
| 교 수 3년차             | 21,130,000 | 20,530,000 | 19,930,000 |
| 교 수 4년차             | 21,410,000 | 20,810,000 | 20,210,000 |
| 교 수 5년차             | 21,690,000 | 21,090,000 | 20,490,000 |
| 교 수 6년차             | 21,970,000 | 21,370,000 | 20,770,000 |
| 교 수 7년차             | 22,250,000 | 21,650,000 | 21,050,000 |
| 교 수 8년차             | 22,530,000 | 21,930,000 | 21,330,000 |
| 교 수 9년차             | 22,810,000 | 22,210,000 | 21,610,000 |
| 교 수 10년차            | 23,030,000 | 22,430,000 | 21,830,000 |
| 교 수 11년차            | 23,240,000 | 22,640,000 | 22,040,000 |
| 교 수 12년차            | 23,450,000 | 22,850,000 | 22,250,000 |
| 교 수 13년차 이상         | 23,670,000 | 23,070,000 | 22,470,000 |

[별표3] 전임강사 명칭 폐지에 따른 연봉적용 조건표

| 연봉계약서 표기연봉  | 적용 연봉      | 적용연봉표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|
| 전임강사 초임     | 조교수 초임     | 공통적용  |
| 전임강사 2년차    | 조교수 2년차    | 기본연봉표 |
| 전임강사 2년차 이상 | 조교수 2년차    | 성과연봉표 |
| 전임강사 3년차 이상 | 조교수 2-1년차  | 기본연봉표 |
| 조 교 수 초 임   | 조교수 3년차    | 공통적용  |
| 조 교 수 2년차   | 조교수 4년차    | 공통적용  |
| 조 교 수 3년차   | 조교수 5년차    | 공통적용  |
| 조 교 수 4년차   | 조교수 6년차    | 기본연봉표 |
| 조교수 4년차 이상  | 조교수 6년차 이상 | 성과연봉표 |
| 조 교 수 5년차이상 | 조교수 7년차이상  | 기본연봉표 |

<별지 제1호 서식>

## 연 봉 계 약 서 (정년트랙)

학교법인 서울신학대학교 이사장(이하“갑”이라 한다)과 ○ ○ ○(이하“을”이라 한다)은(는) 교원의 임용에 따른 연봉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.

- 1.(기 간) “을”의 연봉계약기간은 \_\_\_\_\_년\_\_월\_\_일부터 \_\_\_\_\_년\_\_월\_\_일까지로 한다.
- 2.(연 봉) “을”의 연봉액은 기본연봉 \_\_\_\_\_와 성과연봉 \_\_\_\_\_으로 하며, 성과등급은 평가에 의한 등급에 의한다. 산정된 연봉액은 매월 균등분할하여 지급한다.
- 3.(연봉외급여) 연봉외급여(자가운전보조비,가족수당,급식비,자녀교육비)는 해당여부에 따라 예산집행지침에 의하여 별도로 지급한다.
- 4.(의 무) “을”은 임용기간 중 서울신학대학교 교원으로서 학내 제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복무하여야 한다. “을”이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“갑”이 “을”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.
- 5.(특 이 사 항) 임용계약 종료시에는 연봉계약도 자동 종료된다.

\_\_\_\_\_년 \_\_\_\_월 \_\_\_\_일

“갑” : 학교법인 서울신학대학교 이사장 ○ ○ ○ (인)

“을” : 주소 / \_\_\_\_\_

주민등록번호 / \_\_\_\_\_ ○ ○ ○ (인)

“입회인” 서울신학대학교 총장 ○ ○ ○ (인)